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4

제출일자 : 1996. 11.

제출자 : 서초구청장

1. 개정이유

95. 1. 5 법률 제4919호로 건축법이 개정되고 96. 8. 10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자치구 건축조례중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시조례로 통합하여 개정공포되었으며 구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문개정이 필요함.

2. 주요골자

가. 건축위원회(안 제3조 내지 제12조)

1)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은 포함한 9인내지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가) 위원장 :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나) 자격 : 관계공무원, 토목, 건축, 도시계획 및 에너지, 교통, 조경, 조형예술, 방재등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다) 임기 :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

2) 기능 및 절차

가) 건축허가 및 불허가, 적용 완화등에 관한 사항심의

나) 6층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m²이상의 건축물과 1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10가구이상 단독 주택 포함)심의에 관한 사항

다)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심의 생략에 관한 사항등

나. 건축물의 건축(안 제13조 내지 제15조)

1) 건축허가 수수료에 관한 사항

건축 면적에 따라 1,500원 ~ 1,200,000원 차등

2)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내행

가) 대상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제외)과 4층이하로서 연면적 2,000m²미만
- 용도변경전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등

나) 대행할자의 지정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공사감리자 또는 관할 구청에 등록한 건축사등

다) 업무대행 수수료

- 건축면적에 따라 1회당 400원 ~ 360,000원차등

다. 건축지도원의 자격 및 보수(안 제16조 내지 제17조)

- 건축지도원의 자격 세분화 및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활동비 지급

라.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 및 구조 규정(안 제19조 내지 제21조)

마. 건축물의 설비(안 제22조 내지 제23조)

- 1) 온돌시공 자격자 및 온돌시공 확인서 제출에 관한 사항
- 2) 수도계량기 보온함 설치

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안 제24조 내지 제31조)

- 가) 설치 및 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나) 임 기 : 3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

다) 감정등의 의뢰 :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감정진단 시험등 의뢰

라) 비용부담 :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간 부담할 비용의 범위

마) 신청방법 : 건축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분쟁조정신청서 작성 제출

3. 참고사항

가. 근거법규 : 건축법, 서울특별시건축조례

나. 예산조치 : 현장조사 · 검사대행 수수료 차년도 예산반영 예정

다. 협 의 : 서울특별시 자치구 건축조례 준칙안 시달('96. 7. 4)

라. 기 타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개정(안)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장 건축위원회

제3조(설치)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초구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내지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와 별도로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 토목, 도시계획, 에너지, 교통, 조경, 조형예술, 방재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차가 된다.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임직자의 임기로 한다.

제5조(기능 및 절차등)

-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제4항 규정에 의한 건축불허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법 제62조제5항 및 법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의 완화에 관한 사항

7. 영 제77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내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전부의 적용에 관한 사항
 8. 미관지구안에서 지정·광고한 특정구역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
 9. 건축물의 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제출 대상 건축물에 대한 연순실 방지에 관한 사항
 10. 영 제91조의3제3항 규정에 의한 토지굴착 또는 옹벽설치에 관한 사항
 11. 미관지구안에서 법 제15조 규정의 가설건축물 및 영 제118조 규정의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공사용·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과 옥외 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하여 광고물 심의를 거친 것은 제외한다.)
 12. 미관지구·아파트지구·도시설계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미관지구안에서 미관도로변에 접하지 않은 내지에 건축하는 3층이하의 건축물은 제외 한다.)
 13. 영 제5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14. 6층이상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과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0가구 이상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포함한다)의 건축계획(조경, 공개공지, 에너지 절약, 토지굴착등의 계획을 포함한다)심의에 관한 사항
 15. 기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②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서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이하 "시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1항제14호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영 제5조제3항제7호 및 제8호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③ 구청장은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관계 부서의 의견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분의 1이하로서 1개층 이하의 층수변경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3.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하여 신고 할 수 있는 변경
 4. 대수선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5. 건축물의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난간벽 등의 경미한 외장변경

- ⑤ 제1항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 심의신청은 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심의신청 할 수 있다. 다만, 토지굴착 등의 계획에 관한 심의 신청은 착공신고 이전에 신청할 수 있다.
-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세부심의 사항은 별표1과 같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 회의는 제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

-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③ 소위원회는 제5조제1항 규정의 심의사항 중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심의한다.
- ④ 제4조제4항 및 제5항과 제7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회의록의 비치)

- ① 위원회는 심의 의결사항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10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등)

- ① 위원회는 구청장이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심의에 필요한 도서 및 자료(관련부서의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및 건축주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키기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업무상 조사가 필요하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장 건축물의 건축

제13조(건축허가수수료) 법 제11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자가 납부할 수수료는 별표2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자로 하여금 구청장이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다.
 1.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과 4층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3. 기타 구청장이 업무대행이 필요하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자로 하여금 구청장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자의 지정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다.
 1. 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당해 건축물의 용도변경 설계자
 3. 기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공사감리자 또는 관할 구청에 등록한 건축사
- ③ 영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업무를 제2항의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업무 대행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건축물로서 제2항의 업무대행할 자가 규칙 제21조제1항 규정의 현장조사·검사조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업무대행 수수료)

- ① 구청장이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3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수수료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따로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6조(건축지도원의 자격)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균무한 경력이 있는자.
2. 건축사.
3.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축기사 1급 자격소지자로서 2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5. 건축기사 2급 자격소지자로서 4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6. 건축사보로서 2년이상 균무한 경력이 있는자.
7.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자.
8.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자.
9. 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자로서 7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자.

제17조(건축지도원의 지정 및 보수)

- ① 영 제24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지도원의 지정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무원이 아닌자를 선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건축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②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은 보수와 그외 수당, 어비 및 활동비를 지급한다.
- ③ 공무원인 건축지도원과 명예건축지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어비와 활동비를 지급한다.

제18조(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인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영 제84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너비 4미터이상의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에 접한 모든 도로를 전면도로로 볼 수 있는 구역은 상업지역 및 준주거 지역으로서 다음 각호에 한한다.

1. 도시설계지구
2. 구획정리사업지구
3. 택지개발사업지구
4. 도심재개발구역
5. 상세계획구역
6.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지정 공고한 지역

제 4장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제19조(건축제한) 법 제 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해등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지정·공고한 재해위험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수평 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1층이하의 부분을 주택의 기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침수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적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형에 위치하거나 구조등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건축물의 구조)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 구조
2. 철골콘크리트 구조
3.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4. 철골구조
5. 기타 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구조

제21조(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재해위험구역안에서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철거·개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안전진剿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 5장 건축물의 설비

제22조(온돌의 시공)

- ①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온돌시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온돌시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등록을 한 자로서 온돌시공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미영리법인에서 시행하는 온돌의 기능계 교육을 이수한 자.
 3. 건설업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공사업 면허자
-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은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온돌시공자가 온돌의 사용을 완료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 또는 시공관리자에게 성명, 상호, 등록번호(면허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시공내용 및 하자보수 기간 등을 명시한 온돌시공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수도계량기 보온함 설치)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벽체에 설치하는 수도계량기함은 영하 18°C ± 1°C에서 12시간이상 수도계량기의 동파(유리관 파손)나 수도계량기 내부의 물이 동결되지 않는 보온함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6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제24조(설치 및 구성)

- ① 법 제7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시조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연임할 수 있다.
- ⑤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제25조(회의)

-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의원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시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26조(대표자 선정) 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이 분쟁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5인이내의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감정 등의 의뢰) 위원장은 분쟁조정 신청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감정·진단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28조(비용부담)

- ① 법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간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 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전신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③ 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수당)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
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
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등이 1평방미터 또는 1미터미만의 단
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 · 길이 ·
표시면적등이 1평방미터 또는 1미터미만의 경우에는 1평방미터 또는 1미
터로 산정한다.
4. “표시면적”은 광고탑 · 광고판 · 간판등의 표시부분의 합계 면적을 말한
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점용료중 100원 미만
은 절사한다. (1,950원 → 1,900원)
6.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작업구(맨홀) · 전력구 · 통신구의 직경은 외접하
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7.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신기관 · 전기통신관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
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전별로 전체관을 외접하
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8. 위 표 제3호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9. 위 표 제6호의 “기타”에는 다음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서초구건축위원회 세부 심의사항
(제5조 제6항 관련)

1.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안의 세부 심의사항은 규칙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의 도시설계승인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같다.
2. 제5조제1항제11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에 관한 심의 및 건축계획의 세부 심의사항은 다음 각목과 같다.
 - 가. 용도지역·지구 및 토지이용계획과의 적정성
 - 나. 공공시설, 공급처리시설등 도시기반 시설과의 관계
 - 다. 교통처리계획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
 - 라.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
 - 마. 주변건축물과의 조화
 - 바. 건축물의 용도·규모·배치 및 형태의 합리성
 - 사. 건축구조의 합리성
 - 아. 설계기준 적용의 적정성
 - 자. 조경, 공개공지등 도시환경과의 적정성
 - 차. 에너지절약계획등 건축설비의 합리성
 - 카. 재해예방, 토지굴착부분의 안정성
3. 제5조제1항제11호 내지 제14호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에 관한 심의 및 건축계획 심의 도서는 다음 각목과 같다.
 - 가. 건축계획서
 - 나. 위치도 및 개획대지 주변현황(인접대지의 현황과 주변의 긴물 및 구조물의 현황을 포함)
 - 다. 배지도(교통처리 및 주차계획, 조경 및 공개공지 계획, 1종 평면도 포함)
 - 라. 평면도
 - 마. 입면도
 - 바. 주단면도(구조계획 설명 포함)
 - 사. 대지조성 및 굴토계획도서
 - 아. 에너지절약계획서
 - 자. 공개공지 설치계획서(영 제11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 차.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신청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 신청시 제출하도록하고 있는 제출도서
4. 제3호 사목의 대지조성 및 굴토계획 도서는 다음 각목과 같다.
 - 가. 굴착계획서(굴토공사개요 포함)
 - 나. 주위 시설물현황 조사서(주위건물·도로·구조물등)
 - 다. 지하매설물 현황도(상수도, 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매설물)
 - 라. 흙막이 도면(평면도·단면도·전개도·주요부분 상세도등)
 - 마. 지반조사서

(별표 2)

건축허가등 수수료 (제13조 관련)

(단위 : 원)

면적	금액		
	구분	건축·대수선 허가	용도변경허가
200m' 미만	단독주택	3,000	1,500
	기타	7,000	3,000
200m' 이상 1,000m' 미만	단독주택	4,500	2,000
	기타	15,000	8,000
1,000m' 이상 5,000m' 미만		40,000	15,000
		75,000	40,000
5,000m' 이상 10,000m' 미만		150,000	75,000
		300,000	
10,000m' 이상 30,000m' 미만		600,000	
		1,200,000	
30,000m' 이상			
100,000m' 미만			
100,000m' 이상 300,000m' 미만			
300,000m' 이상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 대수선의 면적산정은 기둥·벽·마당·지붕 등의 대수선하고자 하는 면적 또는 대수선하는 부위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한다.
- 법 제9조 규정의 건축신고 및 법 제10조 규정의 신고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3)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제15조 관련)

(단위 : 원)

면적	금액		
	구분	건축허가	용도변경허가
200m ² 미만	단독주택	900	400
	기타	2,100	900
200m ² 이상 1,000m ² 미만	단독주택	1,300	600
	기타	4,500	2,400
1,000m ² 이상 5,000m ² 미만		12,000	4,500
		22,500	12,000
5,000m ² 이상 10,000m ² 미만		45,000	22,500
		90,000	
10,000m ² 이상 30,000m ² 미만		180,000	
		360,000	
30,000m ² 이상 100,000m ² 미만			
100,000m ² 이상 300,000m ² 미만			
300,000m ² 이상			

1. 금액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1회의 업무대행 수수료

2. 면적산정은 당해 건축행위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3.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별지 1호 서식)

분쟁조정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피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분쟁 대상 건축물 현황	위치				대지면적		
	지역		지구		지목		
	용도		구조		공사종류		
	건축면적	m ²	인면적	m ²	지상	층	
	건폐율	%	용적률	%	지하	층	
①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항							
② 당사자간 교섭결과							
③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건축법 제7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199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인)

서초구건축분쟁조정위원회 귀하

※ 내용이 많을 경우나 증거자료가 있으면 별지로 작성 및 첨부